

3.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체결일자 및 장소 1977년 4월 28일 부다페스트에서 작성
발효일 1980년 8월 19일

【우리나라 관련사항】

가입서 기탁일 1987년 12월 28일
발효일 1988년 3월 28일 (조약 제947호)
관보게제일 1988년 3월 23일

총 강

제1조 동맹의 설립

이 조약의 당사국(이하 “체약국”이라 함)은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을 위한 동맹을 형성한다.

제2조 정의

이 조약 및 규칙의 목적상

가. “특허”라 함은 발명특허, 발명자증, 실용증, 실용신안, 추가특허 또는 증서, 추가발명자증 및 추가실용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 “미생물기탁”이란 문맥에 의거, 이 조약 및 규칙에 따라 행하여지는 다음과 같은 행위, 즉 미생물을 수령하고 수탁하는 국제기탁기관에의 미생물 송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의한 미생물 보관 또는 동 송부 및 보관 모두를 말한다.

다. “특허절차”란 특허출원 또는 특허와 관련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절차를 말한다.

라. “특허절차상의 공표”란 특허출원 또는 특허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 또는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마. “정부간공업소유권기구”란 제9조 1항에 따른 선언서를 제출한 기구를 말한다.

바. “공업소유권청”이란 특허를 허여하는 권한이 있는 체약국 또는 정부간공

업소유권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사. “기탁기관”이란 미생물의 수령, 기탁 및 보관을 하고 그 시료를 분양하는 기관을 말한다.

아. “국제기탁기관”이란 제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탁기관을 말한다.

자. “기탁자”란 미생물을 수령하고 수탁하는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송부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및 동 자연인 또는 법인의 승계인을 말한다.

차. “동맹”이란 제1조의 동맹을 말한다.

카. “총회”란 제10조의 총회를 말한다.

타. “기구”란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말한다.

파. “국제사무국”이란 기구의 국제사무국을 말하며, 지적소유권보호 합동국제사무국(BIRPI)이 존속하는한 동 국제사무국을 말한다.

하. “사무국장”이란 기구의 사무국장을 말한다.

거. “규칙”이란 제12조의 규칙을 말한다.

제1장 실체규정

제3조 미생물기탁의 승인과 효과

1. 가. 특허절차상 미생물의 기탁을 허용 또는 요구하는 체약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제기탁기관에 대한 미생물의 기탁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승인은 국제기탁기관에 의하여 표시된 기탁의 사실과 날자의 승인 및 시료로서 분양된 것은 기탁된 미생물의 시료라는 사실의 승인을 함께 포함한다.

나. 체약국은 1항 가호에 규정된 국제기탁기관이 발행하는 수탁증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 조약과 규칙에서 규정된 문제에 관한한, 어떠한 체약국도 조약과 규칙에서 규정된 요건과 상이한 요건 또는 추가하는 요건을 만족시켜줄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재기탁

1. 가. 국제기탁기관은 어떠한 이유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기탁된 미생물의 시료를 분양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3. 특허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 (1) 그러한 미생물이 생존하고 있지 않거나,
- (2) 시료의 분양을 위해서는 외국에 송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으로의 송부 또는 수령이 수출 또는 수입의 규제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경우 동 기관은 시료를 분양할 수 없음을 확인한 후, 즉시 이유를 지칭하여 기탁자에게 분양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기탁자는 제2항과 이 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원래 기탁되었던 미생물을 재기탁할 권리를 갖는다.

나. 재기탁은 다음을 조건으로 하여 원기탁을 한 국제기탁기관에 행하여야 한다.

- (1) 원기탁을 한 기관이 모든 종류의 미생물에 대하여 또는 기탁된 미생물이 속하는 종류의 미생물에 대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또는 원기탁을 한 국제기탁기관이 기탁된 미생물에 대한 업무의 수행을 일시적으로 또는 확정적으로 정지한 경우에는 재기탁은 다른 국제기탁기관에 행하여야 한다.
- (2) 가항 (2)호에 언급된 경우에는 재기탁은 다른 국제기탁기관에 행할 수 있다.

다. 재기탁을 행함에 있어서는 재기탁된 미생물이 원기탁 미생물과 동일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는 기탁자가 서명한 진술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기탁자의 진술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거증책임은 적용가능한 법에 의하여 규율한다.

라. 가,나,다 및 마항에 따라 원기탁 미생물이 생존에 관하여 과거에 발행된 모든 증명서가 그 미생물이 생존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며 기탁자가 가항에 언급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기탁을 하는 경우에는 동 재기탁은 원기탁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된다.

마. 나항 (1)호가 적용되고 나항 (1)호에 규정된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의 정지, 한정 또는 업무수행의 정지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탁자가 가항에 규정된 통지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항에 규정된 3개월의 시한은 동 공표일로부터 산정한다.

2. 기탁된 미생물이 다른 국제기탁기관에 이송된 경우에는 그 국제기탁기관이 그러한 미생물의 시료를 분양할 수 있는 한 1항 가호에 규정된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5조 수출 및 수입의 규제

각 체약국은 특정 종류의 미생물을 자국 영토에서 수출하거나 자국 영토로 수입하는 것이 규제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규제가 국가안보,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협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규제를 이 조약에 따라 기탁되었거나 또는 기탁될 미생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극히 바람직한 것으로 승인한다.

제6조 국제기탁기관의 지위

1.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기탁기관도 체약국의 영토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동 기관이 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며 계속하여 충족할 것이라는 동 체약국에 의한 보증을 향유하여야 한다. 동 보증은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의하여 부여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탁기관은 동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의 일 회원국의 영토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기탁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영속적으로 존재할 것.
 - 나. 이 조약에 따라 과학적이며 관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에 정한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갖출 것.
 - 다. 공평하며 객관적일 것.
 - 라. 미생물 기탁의 목적상 어떠한 기탁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
 - 마.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또는 특정 종류의 미생물을 수탁하며 그 미생물에 대하여 생존시험을 하고 보관할 것.
 - 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자에게 수탁증을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 생존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할 것.
 - 사. 기탁된 미생물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의 유지요건을 충족시킬 것.
 - 아. 규칙이 정하는 조건과 절차에 의하여 기탁된 미생물의 시료를 분양할 것.
3. 규칙은 다음 경우에 있어서 취할 조치를 정한다.
 - 가. 국제기탁기관이 기탁된 미생물에 대하여 그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나 확정적으로 정지할 경우, 또는 제공된 보증하에서 그 국제기탁기관이 수탁하여야만 하는 어떤 종류의 미생물에 대한 수탁을 거부할 경우.

3.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나. 국제기탁기관에 대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제한할 경우.

제7조 국제기탁기관의 지위 취득

1. 가. 기탁기관은 체약국이 자국 영토내에 있는 기탁기관에 대하여 동 기관이 제6조 2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며 계속하여 충족한다는 취지의 보증선언을 포함한 서면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함으로써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동 지위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가 사무국장에 대하여 상기 선언을 포함한 서면의 통고를 함으로써도 취득될 수 있다.
 - 나. 동 통고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기관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며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취득일이 표시될 수 있다.
 2. 가. 만일 동 통고가 요구되는 선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요구되는 정보를 수령한 것으로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통고는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신속히 공표되어야 한다.
 - 나.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는 동 통고의 공표일 또는 1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날자가 표시되며 그 날자가 동 통고의 공표일보다 늦을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로부터 취득된다.
3. 1항 및 2항에 의한 절차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국제기탁기관의 지위의 정지와 제한

1. 가. 모든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또는 더이상 충족되지 못함을 이유로 하여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지위를 특정종류의 미생물에 제한하도록 총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제7조 1항 가호에 따라 일 국제기탁기관을 위한 선언을 한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의하여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 나.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는 가호에 의한 요청을 하기 전에 제7조 1항에 의한 통고를 한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대하여 그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가 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안된 요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안된 요청의 이유를 사무국장을 경유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다. 동 요청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총회는 가호에 규정된 어떤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를 정지하거나 또는 그 지위를 특정종류의

미생물에 제한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총회의 결정에는 투표의 3분의 2이상 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가. 제7조 1항 가호에 의한 선언을 한 계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인 사무국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또는 특정종류의 미생물에 대한 선언을 취할 수 있으며, 또한 보증이 더이상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언을 취하여야 한다.

나. 동 통고의 결과, 규칙에 정한 날로부터, 동 통고가 선언 전체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제기탁기관의 지위가 정지되고 특정종류의 미생물에 대하여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그 미생물에만 제한된다.

3.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

1. 가. 몇몇 국가가 지역특허를 부여하는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또 그 구성국 모두가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파리동맹)의 구성국인 정부간기구는 제3조 1항 가호에 규정된 승인의 의무, 제3조 2항에 규정된 요건에 관한 의무 및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적용되는 이 조약 및 규칙의 모든 규정의 효력을 수락한다는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약의 발효 전에 제출된 경우에는 전기 언급된 선언은 동 발효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동 발효 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동 선언은 더 늦은 날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선언을 제출한 3개월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선언의 효력은 그 표시한 날에 발생한다.

나. 동 정부간기구는 제3조 1항 나호에 규정된 권리를 갖는다.

2. 이 조약 또는 규칙의 규정중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개정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도 사무국장에게 통고함으로써 1항에 의한 선언을 취할 수가 있다. 동 취하는 다음에 명기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가. 통고가 개정 또는 수정의 발효일 전에 수령된 경우에는 동 발효일.

나. 통고가 가호의 발효일 후에 수령된 경우에는 통고에 표시되어 있는 날 또는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통고를 수령한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는 2항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도 사무국장에게 통고함으로써 1항 가호에 의한, 선언을 취할 수 있다. 동 취하는 사무국장

3. 특허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2년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항에 의한 취하의 통고는 선언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수령되지 아니한다.

4.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가 2항 또는 3항에 의한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의하여 제7조 1항의 통고에 따라 기탁기관이 취득한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는 사무국장이 취하의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정지된다.
5. 1항 가호에 의한 선언, 2 또는 3항에 의한 취하 통고, 제7조 1항 가호의 선언에 포함되는 제6조 1항 두번째 문장에 의한 보증, 제8조 1항에 의한 요청과 제8조 2항에 의한 취하의 통고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구성국으로 구성되며 구성국 정부의 공식대표에 의하여 결정이 행하여지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의 최고기관에 의한 명시적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

제2장 행정규정

제10조 총 회

1. 가. 총회는 체약국으로 구성된다.
 - 나. 각 체약국은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동 대표는 교체대표, 고문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 다. 각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는 총회와 총회가 설치한 위원회 및 작업반의 회합에 있어서 특별 읍저버에 의하여 대표된다.
 - 라. 동맹의 구성국은 아니나, 기구의 구성국 또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파리동맹)의 구성국인 나라와 제2조 마항에서 정의한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를 제외하고 특허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간 기구는 총회의 회합 및 총회가 결정할 경우에는 총회가 설치한 위원회 및 작업반의 회합에서 읍저버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2. 가. 총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1) 동맹의 유지 및 발전과 이 조약의 실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
 - (2) 이 조약에 의하여 총회에 특별히 수여되었거나 또는 부여된 권리의 행사 및 업무의 수행
 - (3) 사무국장에게 개정회의의 준비에 관한 지시를 하달

- (4) 사무국장의 동맹에 관한 보고와 활동을 검토 및 승인하며, 사무국장에게 동맹의 권한내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하달
- (5) 동맹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
- (6) 1항 라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체약국 이외의 나라, 제2조 마항에 정의된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를 제외한 정부간기구와 국제적인 비정부간기구에 대하여 총회의 회합에 옵저버로서 참석하는 것을 인정할지 여부의 결정 그리고 국제기탁기관이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총회의 회합에 옵저버로서 참석하는 것을 인정할지 여부의 결정
- (7) 동맹의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의 강구
- (8) 이 조약에 의한 기타 적절한 기능의 수행

나. 총회는 기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동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청취한 후에 결정을 내린다.

3. 대표는 일개 국가만을 대표하며 그 나라의 명의로서만 투표할 수 있다.

4. 각 체약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5. 가. 체약국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나. 총회는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 자신의 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 동 결정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에 의한 투표로서 정족수를 충족하며 또 필요한 다수가 얻어진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6. 가. 제8조 1항 다호, 제12조 4항 및 제14조 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결정은 투표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나.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가. 총회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매2년마다 1회 정기회기로서 회합하며 가급적 기구의 총회와 동일기간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나. 총회는 사무국장의 발의 또는 체약국 4분의 1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소집하여 임시회기로서 회합한다.

8. 총회는 자신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11조 국제사무국

1. 국제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동맹에 관한 행정업무 특히 이 조약과 규칙 또는 총회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

3. 특허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 나. 개정회의, 총회, 총회가 설치하는 위원회 및 작업반, 사무국장이 소집하여 동맹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모든 회합에 있어서 사무국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2. 사무국장은 동맹의 수석간부직원이 되며 동맹을 대표한다.
 3. 사무국장은 동맹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모든 회합을 소집한다.
 4. 가. 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하는 직원은 총회와 총회가 설치하는 위원회 및 작업반의 모든 회합과 사무국장이 소집하여 동맹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모든 회합에 투표권없이 참가한다.
나. 사무국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1인의 직원은 총회, 위원회, 작업반 및 기타 가호에 규정된 회합에 있어서 당연직 서기가 된다.
 5. 가. 사무국장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개정회의의 준비를 한다.
나. 사무국장은 개정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정부간기구 및 국제적인 비정부간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다. 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하는 자는 개정회의에서의 투표권없이 참가한다.
라. 사무국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1인의 직원은 개정회의에 있어서 당연직 서기가 된다.

제12조 규 칙

1. 규칙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세부규정을 둔다.
가. 이 조약이 명시적으로 규칙에 위임한 사항 또는 규칙소관사항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나. 행정운용상의 요건, 사항 또는 절차
다. 이 조약의 실시상 유용한 세부사항
2. 이 조약과 동시에 채택된 규칙은 이 조약에 부속된다.
3. 총회는 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
4. 가. 나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규칙 수정안의 채택을 위하여서는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나. 국제기탁기관에 의한 기탁된 미생물 시료의 분양에 관한 수정안의 채택을 위하여서는 제안된 수정안에 대하여 어떠한 체결국도 반대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5. 이 조약의 규정과 규칙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3장 개정 및 수정

제13조 조약의 개정

1. 이 조약은 체결국의 회의에 의하여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2. 개정회의의 소집은 총회가 결정한다.
3.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개정회의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 조약의 특정규정의 수정

1. 가.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한 제10조와 제11조의 수정을 위한 제안은 체결국 또는 사무국장이 할 수 있다.
나. 동 제안은 최소한 총회 심의 6개월 전까지 사무국장이 체결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2. 가. 1항에 언급된 조항의 수정안은 총회가 채택한다.
나. 제10조에 대한 수정안의 채택에는 투표수의 5분의 4 이상, 제11조에 대한 수정안의 채택에는 투표수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3. 가. 1항에 언급된 조항의 수정안은 총회가 동 수정안을 채택한 때에 총회의 구성국이었던 체결국의 4분의 3으로부터 각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수락에 관한 서면통고를 사무국장이 수령한 후 1개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나. 수락된 제10조 및 11조에 대한 수정안은 총회가 동 수정안을 채택한 때에 체결국이었던 모든 체결국을 기속한다. 다만, 동 체결국에 대하여 재정상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증가시키는 수정안은 그 수정안의 수락을 통고한 체결국만을 기속한다.
다. 가호의 규정에 따라 수락되어 발효한 수정안은 총회가 그 수정안을 채택한 후에 체결국이 되는 모든 국가를 기속한다.

제4장 최종규정

제15조 체결국이 되기 위한 절차

1.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파리동맹)의 구성국은 다음의 어느 절차에 의하여 체결국이 될 수 있다.

3. 특허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서를 기탁하거나

나. 가입서 기탁

2.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제16조 조약의 발효

1. 이 조약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최초의 5개국에 대하여는 다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조약은 기타의 국가에 대하여는 그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표시된 날자가 이보다 늦을 경우에는 이 조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그 표시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조약의 폐기

1. 모든 체약국은 사무국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국장이 동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2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체약국이 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1항에 규정된 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기탁기관의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취득에 관하여서는 제7조 1항 가호에 규정된 선언을 한 체약국이 이 조약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는 사무국장이 1항에 언급된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정지된다.

제18조 서명과 언어

1. 가. 이 조약은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된 원본 1부에 서명된다.

나. 사무국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하여 이 조약의 서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설립한 협약의 서명에 사용된 다른 언어로 이 조약의 공식 번역본을 작성한다.

다. 사무국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하여 아랍어, 독일어, 이태리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및 기타 총회가 지정하는 언어로 이 조약의 공식 번역본을 작성한다.

2. 이 조약은 1977년 12월 31일까지 부다페스트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9조 조약의 기탁, 사본의 송부와 조약의 등록

1. 이 조약의 원본은 서명을 위한 개방이 종료되었을 때 사무국장에게 기탁

된다.

2. 사무국장은 제15조 1항에 의한 체약국 정부, 제9조 1항 가호에 의하여 선언을 제출할 수 있는 정부간기구와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타 국가의 정부에게 이 조약 및 규칙의 사본 2부를 인증하여 송부한다.
3. 사무국장은 이 조약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4. 사무국장은 모든 체약국, 모든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와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타 국가의 정부 및 제9조 1항 가호에 의하여 선언을 제출할 수 있는 다른 정부간기구에게 이 조약 및 규칙의 수정사본 2부를 인증하여 송부한다.

제20조 통지 사무국장은 체약국,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와 동맹의 구성국은 아니지만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파리동맹)의 구성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18조에 의한 서명

나. 제15조 2항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제9조 1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언과 제9조 2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의 통지

라.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조약의 발효일

마.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바.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이 조약 수정안의 수락

사. 규칙의 수정

아. 이 조약 또는 규칙의 수정안의 발효일

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된 폐기통고